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6 선고 2024나107140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6 선고 2024나107140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3가단10637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, 담당변호사 김상용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영준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

변론종결 2024. 10. 18.

판결선고 2024. 12. 6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. 5. 22. 선고 2023가단10637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, ① 주위적으로, 60,000,000원 및 그중 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1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나머지 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② 예비적으로,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2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,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하는 부분]

○ C, G의 사실확인서(을 제6호증) 기재에 의하면,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상 도로가 불일치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측량하였고, 매수인인 원고가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사정 및 C의 서면 증언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, 원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